# KB반려행복펫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 KB반려행복펫보험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1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0조(손해방지의무)	
TII 0 71	제11조(대위권)	
제3관		
	제12조(계약전 알릴 의무) ···································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	
ᄪᄱᄱ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	
세4건	조럼계획의 영립과 규지	
	제13도(도급계국의 응립 <i>)</i> 제16조(청약의 철회)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18조(계약의 무효)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20조(보험 목적의 관리의무)	
	제21조(타인을 위한 계약)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9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9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9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9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0
	제2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7조(계약의 해지)	
	제27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0조(보험료의 환급)	12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12
제31조(분쟁의 조정)	12
제32조(관할법원)	13
제33조(소멸시효)	13
제34조(약관의 해석)	13
제35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3
제3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3
제37조(개인정보보호)	14
제38조(준거법)	14
제3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4
KB반려행복펫보험 특별약관	
반려동물 상해 사망 특별약관	
반려동물 상해 사망 장례비용 특별약관	
반려동물 위탁비용(I) 특별약관 ·····	
반려동물 위탁비용(II) 특별약관 ······	
반려동물 위탁비용(III) 특별약관 ······	
반려동물 유실시 광고비용(ㅣ) 특별약관	22
반려동물 유실시 광고비용(॥) 특별약관	
반려동물 유실시 재분양비용 특별약관	
반려동물 유실시 유기견 입양비용 특별약관	
반려동물 배상책임 특별약관(공공장소 대물)	20
반려동물 배상책임 특별약관(대인 및 대동물) 반려동물 치료비 보장제외 특별약관	
지방자치단체용 반려견 배상책임 특별약관	
반려동물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반려동물 상해입원 위탁비용 특별약관	
반려동물 교통상해입원 위탁비용 특별약관	
스위치보험 특별약관	
반려동물 산책중 상해치료비 특별약관(산책1회)	
반려동물 산책중 상해사망 특별약관(산책1회)	
반려동물 산책중 배상책임 특별약관(대인 및 대동물)(산책1회)	
반려동물 산책중 유실시 광고비용 특별약관(산책1회)	
맹견 배상책임 특별약관	62
전자서명 특별약관	······ 76
공동인수 특별약관	
단체취급특별약관(I) ······	······ 78
단체취급(ㅣ)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 79
단체취급(ㅣ) 보험기간설정 추가특별약관	80
단체취급특별약관(II)	
단체취급(॥)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단체취급(॥) 보험기간설정 추가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단체계약)	
보험기간설정 추가특별약관(단체계약)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89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상품다수구매자)	90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상품다수구매자)	91
날짜인식오류 보장제외 추가약관	92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9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95
적용환율 특별약관	10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06
공동분담금 특별약관	107
총보험가입금액 적용 특별약관	109
총보상한도액 적용 특별약관	110
제재 및 엠바고 특별약관	112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주요 민원 / 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가입자 유의사항

#### 1.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 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 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 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 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 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 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 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3.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4. 계약의 무효

#### 1) 신체보장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 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2) 재물보장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3) 배상책임보장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5. 계약의 소멸

#### 1) 신체보장 관련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2) 재물보장 관련

사고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료의 환급 조항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8.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 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2)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 리셔야 합니다.

#### 9. 보험금의 지급절차

#### 1) 신체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재물보장 및 배상책임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10.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보험용어 해설

보험용어	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 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형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야하는 요금
보험목적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 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보험금	<ul> <li>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li> <li>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li> </ul>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연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 을 의미합니다.

# KB반려행복펫보험 보통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반려동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 서를 말합니다.
-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i)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관리하는 개
  - (ii)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관리하는 고양이
  - 다만 아래에 기재된 반려동물은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i)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 (ii)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개(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 인 안내견은 제외)
  - (iii)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
  - (iv) 유기견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개
-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 나.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동일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주체가 상호구제를 위하여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전을 납입하고 그 가입자에게 소정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동의 구제를 하는 계약으로, 가입자의 범위가 구성원 또는 특정 지역으로 한정됩니다.

- 라.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3.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 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 용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상해가 발생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가입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피보험자에게 상해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보상하는 치료비보험금은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계약자 부담률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보험금의 총 합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이하 '연간 총 보상한도액'이라 합니다)을 한도로 하며, 다수의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각 사고별로 적용하지 않고, 연간 총 보상금액을 기준으로합니다.
- ④ 가입동물이 제1항의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치료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견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또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풍수해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4.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6. 보험기간 개시 전 90일 안에 받았던 치료 및 수술의 재발로 생긴 손해
- 7. 회사가 보험료를 받기 전 사고의 원인으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
- 8. 회사가 보험료를 받기 전 사고의 원인으로 손해가 지속되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
- 9. 수렵, 투견, 경주 등과 수색, 마약탐지, 경계 등의 특수목적으로 업무수행 및 훈련 중의 손해
- 10. 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11. 아래의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 건강식품, 보조식품, 보조치료제 및 보충제 비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지 불문합니다.)
  - 나. 목욕 비용(약용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 비용
  - 다. 한방 및 한약, 온천요법, 산소요법, 면역요법 등의 대체적 처치에 의한 치료를 위한

비용

- 라. 가입동물의 이송비, 안락사를 위한 비용, 장례식비용, 매장비용 등 가입동물의 사망 후에 소용된 비용,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명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카운슬링 비용
- 12.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13. 정부, 공공기관, 학교 및 영구기관 등에서 학술 또는 연구용으로 공여하여 발생된 손해.
- 14. 보험목적이 유실 또는 매몰되어 보험목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손해
- 15. 보험목적의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와 인식표(마이크로칩 포함)가 오손, 훼손, 멸실되는 등 목적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16. 사료공급 및 보호, 피난처제공,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 17.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진 및 고관절형성부진과 관련된 상해 치료비
- 18.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래의 기왕증(질병 또는 상해 포함)으로 인한 손해
  - 가. 기왕증이라 함은 (최초 보험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으로 선 천성 결함이나 질병을 포함합니다.
  - 나. 기왕증에 대해서는 치료완료가 될 때까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다. 단,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난치성 기왕증을 지닌 아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에서 제외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간부전,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뇌수종, 당뇨, 림프관확장증, 말티즈 괴사성수막염, 부신피질 기능저하증, 부신피질 기능항진증, 빈혈-비재생성, 삼첨판/승모판 형성이상, 소뇌변성, 수막뇌척수염-육아종성, 신부전, 신증후군, 심근염, 심부전, 췌장 외분비기능저하증, 확장성 심근병

- 19. 임신, 출산, 불임, 거세와 관련된 치료비
- 20. 잔존유치, 잠복고환, 배꼽헤르니아, 항문선제거 등 건강한 애견에 시행하는 외과적 수술 또는 기타의 검사 등으로 발생한 비용
- 21. 살균, 살충 및 미용과 관련된 비용
- 22. 백신 등의 예방접종비 또는 그 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투약, 정기검진 등으로 발생한 비용
- 23. 건강상담 비용 및 병리조직검사료
- 24. MRI, CT단층촬영 등 검사비용. 단, 엑스레이 촬영 및 혈청검사비용은 보상합니다.
- 25. 정기적인 처치(이도, 항문선, 점안 등), 치료를 동반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처방식에 의한 치료
- 26. 단이, 단미, 성대제거, 귓밥제거,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손발톱제거, 미용정형수술, 시험개복수술 또는 이와 유사한 치료
- 27. 보험목적의 동물병원이송비 및 의약품 등의 이송비용
- 28. 입원치료비. 단 피부병, 구강내 질환 및 외이염에 의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 29. 광견병 및 그로 인한 질병
- 30. 의료장비, 의료약물 등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
- 31. 수의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및 과잉진료에 의한 손해
- 32. 독극물의 투약에 의한 손해
- 33. 질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에 대한 치료비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가입동물의 사진 3매(전면, 측면, 얼굴) 또는 동물등록증 등
  - 3. 사고증명서(진단서, 처방전, 의료비 영수증 등)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5.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3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17조(개설)에서 규정한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다수의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의 총 합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_\_\_\_\_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 【예시】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계약A: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 계약B: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

보험가액: 2,000만원 / 손해액: 1,000만원

→ 계약A보험회사 : 400만원 지급 = 1,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계약B보험회사 : 600만원 지급 = 1,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계약A: 책임액 1,000만원 / 계약B: 책임액 1,000만원 / 손해액 : 1,000만원

- → 계약A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계약B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 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 제11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

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2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2.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있습니다.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께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 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 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에 따른 중요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 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

니다.

####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18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보험자
  -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제20조(보험 목적의 관리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을 사육, 관리, 보호함에 있어서 그 보험목적이 본래 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하여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수면 등이 보장되도록 적정한 사육관리를 할 것
  -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하여 예방접종, 정기검진, 기생충구제 등을 실 시할 것
  -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

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 2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 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 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7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 제2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 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 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7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2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 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 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 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27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 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설명】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0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 다.
-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회사가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7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31조(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 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제3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3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설명】

소멸시효는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제34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민법」제2조 제1항)

## 제35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 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제3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설명】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합의를 말합니다.

#### 제37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3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3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설명】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 각각 5천만원(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을 제외한 본 보험회사 보호대상 상품 각각 합산)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KB반려행복펫보험 특별약관

# 반려동물 상해 사망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또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사망은 상해로 인하여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4.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7.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0.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 반려동물 상해 사망 장례비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장례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또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장례비용이라 함은 아래 장례절차 중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 1. 화장
  - 2. 역습(소렴)
  - 3. 수의(대렴)
  - 4. 입관
  - 5. 유골 수십 및 유골함 전달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 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4.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7.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0. 사료공급 및 급수, 보호, 피난처제공,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 11. 메모리얼스톤 및 그 외 악세사리로부터 발생한 비용
- 12. 안락사. 단,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안락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 반려동물 위탁비용(1)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위탁비용은 반려동물 위탁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위탁비용의 지급일수는 피보험자의 1회 입원당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보험개시일 이전에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발생한 경우
- 5.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임신 및 출산인 경우
- 6.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물중독, 알콜중독, 자살, 자살시도 및 자해인 경우

# 제3조(보험금의 청구)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 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가입동물의 사진 3매(전면, 측면, 얼굴) 또는 동물등록증 등
  - 5. 수탁기관 위탁비용 영수증
  - 6.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 반려동물 위탁비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위탁비용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위탁비용의 지급일수는 피보험자의 1회 입원당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용어풀이】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보험개시일 이전에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발생한 경우
- 5.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 )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임신 및 출산인 경우
- 7.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물중독, 알콜중독, 자살, 자살시도 및 자해인 경우
- 8.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9.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제3조(보험금의 청구)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가입동물의 사진 3매(전면, 측면, 얼굴) 또는 동물등록증 등
  - 5. 수탁기관 위탁비용 영수증
  - 6.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 반려동물 위탁비용(Ⅲ)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기간 동안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위탁비용은 반려동물 위탁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 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위탁비용의 지급일수는 피보험자의 1회 입원당 ( )일을 최고한 도로 합니다.

####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보험개시일 이전에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발생한 경우
- 5.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 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임신 및 출산인 경우
- 7.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물중독, 알콜중독, 자살, 자살시도 및 자해인 경우
- 8.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9.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제3조(보험금의 청구)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가입동물의 사진 3매(전면, 측면, 얼굴) 또는 동물등록증 등
  - 5. 수탁기관 위탁비용 영수증
  - 6.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 반려동물 유실시 광고비용(1)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유실상태에 놓이게 되어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유실동물 찾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유실동물 찾기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 접수한 증명서와 전단지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를 위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유실상태라 함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 버려지는 등으로 현재 보호되는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 제2조(면책기간)

- ① 회사는 면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면책기간은 이 약관의 보장개시일로부터 ()일로 합니다. 다만,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 반려동물 유실시 광고비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유실상태에 놓이게 되어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유실동물 찾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유실동물 찾기 지원금이라 함은 아래 광고물 제작 및 게시를 위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 1. 전단지
  - 2. 현수막
  - 3. 온라인광고
  - 4. 신문사광고
  - 5. 잡지광고
- ② 제1항의 유실동물 찾기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 접수한 증명서와 광고제작 및 게시를 위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유실상태라 함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 버려지는 등으로 현재 보호되는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 제2조(면책기간)

- ① 회사는 면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면책기간은 이 약관의 보장개시일로부터 ()일로 합니다. 다만,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 반려동물 유실시 재분양비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유실상태에 놓이게 되어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한 이후 ( )일동안 찾지 못하여 동종의 동물로 재분양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재분양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재분양 비용을 받기 위하여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 접수한 증명서와 재분양 동물의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재분양 비용은 사업자등록증, 재분양 증명서, 재분양 비용 증빙이 가능한 인증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유실상태라 함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지는 등으로 현재 보호되는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실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발생하는 재분양 비용
- 2. 사업자등록증, 재분양 증명서, 재분양 비용 증빙이 불가한 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 3.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과 다른 종의 동물을 분양하는 비용
- 4. 유실 신고일로부터 ( )일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하는 재분양 비용
- 5. 재분양 동물의 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제3조(준용규정)

# 반려동물 유실시 유기견 입양비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유실상태에 놓이게 되어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한 이후 피보험자가 동물보호센터를 통하여 유기견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유기견 입양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정부 및 지자체로 부터 입양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한하여 회사는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입양비용은 아래의 비용들을 말하며, 유기견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발생된 비용에 한합니다.
  - 1. 질병 진료 및 검사비용
  - 2. 예방접종비용
- ③ 제1항의 유실상태라 함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지는 등으로 현재 보호되는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반려견 유실시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 접수한 증명서
- 4. 분양확인서 사본
- 5. 입양비용 증빙자료(세부내역 영수증 등)
- 6.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제3조(준용규정)

# 반려동물 배상책임 특별약관(공공장소 대물)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공공장소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타인 소유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 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용어풀이】

- 공공장소
- 이 보험에서「공공장소」라 함은 사회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 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7.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8.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 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10.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 1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13.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가입 반려동물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15. 가입 반려동물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 16. 목줄 및 맹견 입마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17. 공공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
- 18.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배상책임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 담금은 각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단, 사망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에 추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아래의 사항을 회사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5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 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의 청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본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
  -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3.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및 영상물

###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 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_\_\_\_\_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_\_\_\_\_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사례】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A: 보상책임액 1,000만원 / 계약B: 보상책임액 1,000만원 / 손해액 : 1,000만원 → 계약A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1,000만원) → 계약B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1,000만원)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반려동물 배상책임 특별약관(대인 및 대동물)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 로 타인의 신체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 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 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7.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8.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 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10.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 1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13.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가입 반려동물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15. 가입 반려동물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 16. 목줄 및 맹견 입마개 착용 등 동불보호법상 안전관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17. 타인 소유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 단,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합니다.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 담금은 각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단, 사망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에 추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아래의 사항을 회사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5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 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외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의 청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본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
  -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3.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 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사례】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A: 보상책임액 1,000만원 / 계약B: 보상책임액 1,000만원 / 손해액 : 1,000만원

- → 계약A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1,000만원)
- → 계약B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1,000만원)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반려동물 치료비 보장제외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 동물에게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용 반려견 상해치료비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상해가 발생하여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가입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상해치료비 보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보상하는 치료비보험금은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후,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서 정한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치료비보험금】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과 보험증권에서 정한 1사고당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가입동물에게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보험금의 총 합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④ 가입동물이 제1항의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365일 이내인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⑤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2회 이상 치료하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간주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합병증 및 의학상 서로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동일 사고로 간주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한 치료라도 치료비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치료일(의사로부터 완치판정을 받은 최종 치료일을 말합니다.)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개시되는 치료는 새로운 사고로 간주하여 이 약관에 따릅니다.
- ⑥ 제1항의 가입동물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i)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반려(伴侶)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써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 (ii) 계약자인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반려동물
- ⑦ 단, 아래에 기재된 반려동물은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i)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 (ii) 경찰견, 구조견, 군견 등 특수한 목적의 개(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 (iii)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
  - (iv)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 (v) 계약자인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 (vi) 계약자인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피보험자가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

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12.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가.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
  - 나.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에 대한 치료
  - 다.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 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라.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마.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바. 미용으로 인한 비용
  - 사.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아.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 의 관리 비용
  - 자.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 차.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 카.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비용
  - 타.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파.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하.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갸.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냐.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 라.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블을 포함)
  - 마.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내 질환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지방자치법 제2조에 정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내지 시, 군, 구
-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단체

# 지방자치단체용 반려견 배상책임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 로 타인의 신체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 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 제1항의 가입동물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i)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반려(伴侶)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써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 (ii) 계약자인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반려동물
- ④ 단. 아래에 기재된 반려동물은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i)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 (ii) 경찰견, 구조견, 군견 등 특수한 목적의 개(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 은 제외)
  - (iii)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
  - (iv)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 (v) 계약자인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 (vi) 계약자인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피보험자가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7.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8.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반려동물 포함)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 그 재물(반려동물 포함)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10.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 1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1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가입 반려동물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15. 가입 반려동물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 16. 반려견의 사냥행위로 발생하는 배상책임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 담금은 각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 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단, 사망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가입동물에 의해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에 추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아래의 사항을 회사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 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5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

##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의 청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본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
  -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3.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 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_\_\_\_\_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_\_\_\_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사례】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A: 보상책임액 1,000만원 / 계약B: 보상책임액 1,000만원 / 손해액 : 1,000만원 → 계약A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1,000만원) → 계약B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1,000만원)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10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회사가 제 1 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들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은 때
- ⑤ 회사가 제 1 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합니다.

#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지방자치법 제2조에 정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내지 시, 군, 구
-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거나 그 업 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단체

# 반려동물 교통상해치료비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동물에게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교통상해가 발생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가입동물의 교통상해치료비를 이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동물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1. 운행중인 자동차 혹은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교통사고
  -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④ 제2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⑤ 제2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 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 ⑥ 회사가 보상하는 치료비보험금은 하나의 교통상해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계약자 부담률()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⑦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보험금의 총 합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이하 '연간 총 보상한도액'이라 합니다)을 한도로 하며, 다수의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각 사고별로 적용하지 않고, 연간 총 보상금액을 기준으로합니다.
- ⑧ 가입동물이 제1항의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치료비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풍수해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4.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6. 보험기간 개시 전 90일 안에 받았던 치료 및 수술의 재발로 생긴 손해
- 7. 회사가 보험료를 받기 전 사고의 원인으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
- 8. 회사가 보험료를 받기 전 사고의 원인으로 손해가 지속되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
- 9. 수렵, 투견, 경주 등과 수색, 마약탐지, 경계 등의 특수목적으로 업무수행 및 훈련 중의 손해

- 10. 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11. 아래의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 건강식품, 보조식품, 보조치료제 및 보충제 비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지 불문합니다.)
  - 나. 목욕 비용(약용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 비용
  - 다. 한방 및 한약, 온천요법, 산소요법, 면역요법 등의 대체적 처치에 의한 치료를 위한 비용
  - 라. 가입동물의 이송비, 안락사를 위한 비용, 장례식비용, 매장비용 등 가입동물의 사망 후에 소용된 비용,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명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카운슬링 비용
- 12.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13. 정부, 공공기관, 학교 및 영구기관 등에서 학술 또는 연구용으로 공여하여 발생된 손해
- 14. 보험목적이 유실 또는 매몰되어 보험목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손해
- 15. 보험목적의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와 인식표(마이크로칩 포함)가 오손, 훼손, 멸실되는 등 목적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16. 사료공급 및 보호, 피난처제공,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 17.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진 및 고관절형성부진과 관련된 상해 치료비
- 18.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래의 기왕증(질병 또는 상해 포함)으로 인한 손해
  - 가. 기왕증이라 함은 (최초 보험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으로 선 천성 결함이나 질병을 포함합니다.
  - 나. 기왕증에 대해서는 치료완료가 될 때까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다. 단,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난치성 기왕증을 지닌 아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에서 제외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간부전,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뇌수종, 당뇨, 림프관확장증, 말티즈 괴사성수막염, 부신피질 기능저하증, 부신피질 기능항진증, 빈혈-비재생성, 삼첨판/승모판 형성이상, 소뇌변성, 수막뇌척수염-육아종성, 신부전, 신증후군, 심근염, 심부전, 췌장 외분비기능저하증, 확장성 심근병

- 19. 임신, 출산, 불임, 거세와 관련된 치료비
- 20. 잔존유치, 잠복고환, 배꼽헤르니아, 항문선제거 등 건강한 애견에 시행하는 외과적 수술 또는 기타의 검사 등으로 발생한 비용
- 21. 살균, 살충 및 미용과 관련된 비용
- 22. 백신 등의 예방접종비 또는 그 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투약, 정기검진 등으로 발생한 비용
- 23. 건강상담 비용 및 병리조직검사료
- 24. MRI, CT단층촬영 등 검사비용. 단, 엑스레이 촬영 및 혈청검사비용은 보상합니다.
- 25. 정기적인 처치(이도, 항문선, 점안 등), 치료를 동반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처방식에 의한 치료
- 26. 단이, 단미, 성대제거, 귓밥제거,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손발톱제거, 미용정형수술, 시험개복수술 또는 이와 유사한 치료
- 27. 보험목적의 동물병원이송비 및 의약품 등의 이송비용
- 28. 입원치료비. 단 피부병, 구강내 질환 및 외이염에 의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 29. 광견병 및 그로 인한 질병
- 30. 의료장비, 의료약물 등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
- 31. 수의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및 과잉진료에 의한 손해
- 32. 독극물의 투약에 의한 손해
- 33. 질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에 대한 치료비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반려동물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동물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1. 운행중인 자동차 혹은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교통사고
  -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④ 제2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사망은 교통상해로 인하여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 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4.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7.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0.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 반려동물 상해입원 위탁비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피보험자에게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위탁비용은 반려동물 위탁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위탁비용의 지급일수는 피보험자의 1회 입원당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용어풀이】

##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또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보험개시일 이전에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발생한 경우
- 5.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임신 및 출산인 경우
- 6.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물중독, 알콜중독, 자살, 자살시도 및 자해인 경우

# 제3조(보험금의 청구)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 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가입동물의 사진 3매(전면, 측면, 얼굴) 또는 동물등록증 등
  - 5. 수탁기관 위탁비용 영수증
  - 6.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 반려동물 교통상해입원 위탁비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 나.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 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 발생한 교통사고
  - 다.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2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④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⑤ 제2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의 위탁비용은 반려동물 위탁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 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위탁비용의 지급일수는 피보험자의 1회 입원당 ( )일을 최고한 도로 합니다.

# 【용어풀이】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보험개시일 이전에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발생한 경우
- 5.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임신 및 출산인 경우
- 6.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물중독, 알콜중독, 자살, 자살시도 및 자해인 경우

### 제3조(보험금의 청구)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 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가입동물의 사진 3매(전면, 측면, 얼굴) 또는 동물등록증 등
  - 5. 수탁기관 위탁비용 영수증
  - 6.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 스위치보험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활동개시 전 통지한 활동기간에 대해 적용합니다. 해당기간 동안 최초가입 당시 정한 담보 및 보장 조건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통지방법은 증권에 기재된 통지방법을 통하여 가능하며, 통지한 활동기간에 대해 스위치의 상태가 On으로 유지됩니다.

## 【스위치】

증권에 기재된 통지방법을 통하여 해당상품에 대해 스위치의 On/Off 두 가지 상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의 상태가 On으로 유지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통지방법을 통하여 스위치의 상태가 On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3조(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에 기재된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증권에 기재된 통지방법을 통하여 스위치의 상태가 On으로 된 시점에 시작하여 상태 Off가 되는 시점에 끝납니다.

## 제4조(준용규정)

# 반려동물 산책중 상해치료비 특별약관(산책1회)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동물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와 산책(피보험자의 소유,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반려동물과 야외활동)하는 동안 진단 확정된 상해가 발생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가입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보상하는 치료비보험금은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계약자 부담률()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보험금의 총 합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이하 '연간 총 보상한도액'이라 합니다)을 한도로 하며, 다수의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각 사고별로 적용하지 않고, 연간 총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가입동물이 제1항의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치료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견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또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풍수해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4.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6. 보험기간 개시 전 90일 안에 받았던 치료 및 수술의 재발로 생긴 손해
- 7. 회사가 보험료를 받기 전 사고의 원인으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
- 8. 회사가 보험료를 받기 전 사고의 원인으로 손해가 지속되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 해
- 9. 수렵, 투견, 경주 등과 수색, 마약탐지, 경계 등의 특수목적으로 업무수행 및 훈련 중의 손해
- 10. 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11. 아래의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 건강식품, 보조식품, 보조치료제 및 보충제 비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지 불문합니다.)
  - 나. 목욕 비용(약용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 비용
  - 다. 한방 및 한약, 온천요법, 산소요법, 면역요법 등의 대체적 처치에 의한 치료를 위한 비용
  - 라. 가입동물의 이송비, 안락사를 위한 비용, 장례식비용, 매장비용 등 가입동물의 사망후에 소용된 비용,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명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카운슬링 비용

- 12.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13. 정부, 공공기관, 학교 및 영구기관 등에서 학술 또는 연구용으로 공여하여 발생된 손해.
- 14. 보험목적이 유실 또는 매몰되어 보험목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손해
- 15. 보험목적의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와 인식표(마이크로칩 포함)가 오손, 훼손, 멸실되는 등 목적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16. 사료공급 및 보호, 피난처제공,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 17.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진 및 고관절형성부진과 관련된 상해 치료비
- 18.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래의 기왕증(질병 또는 상해 포함)으로 인한 손해
  - 가. 기왕증이라 함은 (최초 보험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으로 선 천성 결함이나 질병을 포함합니다.
  - 나. 기왕증에 대해서는 치료완료가 될 때까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다. 단,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난치성 기왕증을 지닌 아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에서 제외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간부전,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뇌수종, 당뇨, 림프관확장증, 말티즈 괴사성수막염, 부신피질 기능저하증, 부신피질 기능항진증, 빈혈-비재생성, 삼첨판/승모판 형성이상, 소뇌변성, 수막뇌척수염-육아종성, 신부전, 신증후군, 심근염, 심부전, 췌장 외분비기능저하증, 확장성 심근병

- 19. 임신, 출산, 불임, 거세와 관련된 치료비
- 20. 잔존유치, 잠복고환, 배꼽헤르니아, 항문선제거 등 건강한 애견에 시행하는 외과적 수술 또는 기타의 검사 등으로 발생한 비용
- 21. 살균. 살충 및 미용과 관련된 비용
- 22. 백신 등의 예방접종비 또는 그 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투약, 정기검진 등으로 발생한 비용
- 23. 건강상담 비용 및 병리조직검사료
- 24. MRI, CT단층촬영 등 검사비용. 단, 엑스레이 촬영 및 혈청검사비용은 보상합니다.
- 25. 정기적인 처치(이도, 항문선, 점안 등), 치료를 동반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처방식에 의한 치료
- 26. 단이, 단미, 성대제거, 귓밥제거,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손발톱제거, 미용정형수술, 시험개복수술 또는 이와 유사한 치료
- 27. 보험목적의 동물병원이송비 및 의약품 등의 이송비용
- 28. 입원치료비. 단 피부병, 구강내 질환 및 외이염에 의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 29. 광견병 및 그로 인한 질병
- 30. 의료장비, 의료약물 등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
- 31. 수의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및 과잉진료에 의한 손해
- 32. 독극물의 투약에 의한 손해
- 33. 질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에 대한 치료비
- 34. 스위치보험 특별약관의 스위치가 Off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보험료의 산정)

활동의 기본단위는 ()시간당 1회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시간미만의 활동인 경우에도 1회가 차감됩니다. 피보험자의 연장 요청으로 인하여 ()시간 단위가 넘는 경우 단위시간 범위와 관계없이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1회가 추가됩니다.

# 제4조(피보험자의 의무)

- ① 활동이 시작되는 경우 즉시 스위치를 On 하여야 합니다. 단, 활동이 시작된 후 스위치를 On을 한 경우 스위치가 On이 된 시점부터 보험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 ②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 스위치를 Off 하여야 합니다. 단. On이 된 시점부터 ()시간이 지 난 경우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활동이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스위치를 On으로 유 지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종료되기 이전에 미리 증권에 기재된 통보방법을 통하여 연장 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 반려동물 산책중 상해사망 특별약관(산책1회)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와 산책(피보험자의 소유,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반려동물과 야외활동)하는 동안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또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사망은 상해로 인하여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4.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7.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0.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1. 스위치보험 특별약관의 스위치가 Off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보험료의 산정)

활동의 기본단위는 ()시간당 1회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시간미만의 활동인 경우에도 1회가 차감됩니다. 피보험자의 연장 요청으로 인하여 ()시간 단위가 넘는 경우 단위시간 범위와 관계없이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1회가 추가됩니다.

# 제4조(피보험자의 의무)

- ① 활동이 시작되는 경우 즉시 스위치를 On 하여야 합니다. 단, 활동이 시작된 후 스위치를 On을 한 경우 스위치가 On이 된 시점부터 보험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 ②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 스위치를 Off 하여야 합니다. 단. On이 된 시점부터 ( )시간이 지

난 경우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활동이 (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스위치를 On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종료되기 이전에 미리 증권에 기재된 통보방법을 통하여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 반려동물 산책중 배상책임 특별약관(대인 및 대동물)(산책1회)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과 산책 (피보험자의 소유,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반려동물과 야외활동)을 하는 동안 반려 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 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 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 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7.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8.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 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10.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 1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13.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가입 반려동물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15. 가입 반려동물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 16. 목줄 및 맹견 입마개 착용 등 동불보호법상 안전관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17. 타인 소유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 단,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합니다.
- 18. 스위치보험 특별약관의 스위치가 Off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 담금은 각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단, 사망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에 추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아래의 사항을 회사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5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 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의 청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본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3.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 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사례】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A: 보상책임액 1,000만원 / 계약B: 보상책임액 1,000만원 / 손해액 : 1,000만원 → 계약A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1,000만원) → 계약B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1,000만원)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10조(보험료의 산정)

활동의 기본단위는 ()시간당 1회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시간미만의 활동인 경우에도 1회가 차감됩니다. 피보험자의 연장 요청으로 인하여 ()시간 단위가 넘는 경우 단위시간 범위와 관계없이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1회가 추가됩니다.

### 제11조(피보험자의 의무)

- ① 활동이 시작되는 경우 즉시 스위치를 On 하여야 합니다. 단, 활동이 시작된 후 스위치를 On을 한 경우 스위치가 On이 된 시점부터 보험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 ②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 스위치를 Off 하여야 합니다. 단. On이 된 시점부터 ()시간이 지난 경우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활동이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스위치를 On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종료되기 이전에 미리 증권에 기재된 통보방법을 통하여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12조(준용규정)

# 반려동물 산책중 유실시 광고비용 특별약관(산책1회)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와 산책(피보험자의 소유,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반려동물과 야외활동)하는 동안 유실상태에 놓이게 되어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유실동물 찾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유실동물 찾기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 접수한 증명서와 전단지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를 위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유실상태라 함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 버려지는 등으로 현재 보호되는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스위치보험 특별약관의 스위치가 Off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제3조(면책기간)

- ① 회사는 면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면책기간은 이 약관의 보장개시일로부터 ()일로 합니다. 다만,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4조(보험료의 산정)

활동의 기본단위는 ()시간당 1회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시간미만의 활동인 경우에도 1회가 차감됩니다. 피보험자의 연장 요청으로 인하여 ()시간 단위가 넘는 경우 단위시간 범위와 관계없이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1회가 추가됩니다.

### 제5조(피보험자의 의무)

- ① 활동이 시작되는 경우 즉시 스위치를 On 하여야 합니다. 단, 활동이 시작된 후 스위치를 On을 한 경우 스위치가 On이 된 시점부터 보험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 ②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 스위치를 Off 하여야 합니다. 단. On이 된 시점부터 ()시간이 지난 경우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활동이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스위치를 On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종료되기 이전에 미리 증권에 기재된 통보방법을 통하여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 맹견 배상책임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맹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및 타인 소유의 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3의2호】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② 회사가 보상하는 제1항에서 정한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 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개 시시점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더라도 고의가 아닌 사고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 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6.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7.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8.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10.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 1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13.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수렵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가입 맹견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15. 가입 맹견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단,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보험 증권상 아래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피해자의 과실 및 직업, 나이, 수입 등을 고려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 인 경우에는 2,000만원
  -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별표1]에 정하는 금액
  -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후유 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 1인당 [별표2]에 정하는 금액
  -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더한 금액
  -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제2호와 제3호 금액의 더한 금액
  -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 7. 대동물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 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2항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 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세부규정)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사망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피해자의 상해 및 후유장해 등급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상해 및 후유장해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상해 및 후유장해 등급 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상해 및 후유장해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이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해 및 후유장해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상해 및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 ④ '【별표1】 상해 등급별 맹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및 '【별표2】 후유장해 등급별 맹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의 표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및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별표1】 또는 【별표2】에서 정하는 피해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보험금액의한도를 정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등의 지급한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피해자(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에 추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아래의 사항을 회사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6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 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의 청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본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
  -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3.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 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_\_\_\_\_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_\_\_\_\_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사례】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A: 보상책임액 1,000만원 / 계약B: 보상책임액 1,000만원 / 손해액 : 1,000만원

- → 계약A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1,000만원)
- → 계약B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1,000만원)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상해 등급별 맹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등급	보험금액	상해 내용
1급	1,500만원	1. 엉덩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 피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출혈로 개두수술(開頭手術)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심한 뇌 타박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넓적다리뼈 중간부분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쇄성 골절
		9. 3도 화상 등 연조직(soft tissue)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9퍼센 트 이상인 상해
		10. 팔다리와 몸체에 연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有莖)피부이식술 (pedicled skin graft: 피부・피하조직을 전면에 걸쳐 잘라내지 않고 일부를 남기고 이식하는 방법)이 불가피한 상해
		11.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800만원	1. 위팔뼈 중간부분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wedge compression fracture: 전방굴 곡에 의한 척추 앞부분의 손상으로 신경증상이 없는 안정성 골 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 골절이 동반된 상해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자뼈 중간부분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750만원	1. 위팔뼈 윗목부분 골절
		2. 위팔뼈 복사부분[踝部]골절과 팔꿉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노뼈와 자뼈의 중간부분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손목손배뻐[水根舟狀骨]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6.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골절
		7. 무릎뼈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적출술이 적용 되는 상해
		8. 정강이뼈 복사부분 골절이 관절 부분을 침범하는 상해
		9. 발목뼈ㆍ발허리뼈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 연골 파열과 정강이뼈가시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膝內障: 무릎관절을 구성하는 뼈, 반월판,
		인대 등의 손상과 장애)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한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700만원	1. 넓적다리뼈 복사부분 골절
		2.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
		3. 목말뼈[距骨] 윗목부분 골절
		4. 슬개인대(무릎뼈와 정강이뼈를 연결하는 인대) 파열
		5. 어깨 관절부의 회전 근개 파열
		6. 위팔뼈외측상과 전위골절
		7. 팔꿉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5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
		2. 발목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무릎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 파열
		4. 족중골 골절
		5.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6. 노뼈 원위부 골절
		7. 자뼈 근위부 골절
		8.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발등부 근건 파열창
		10. 손바닥부 근건 파열창
		11. 아킬레스건 파열
		12. 2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3.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400만원	1. 소아의 다리 긴뼈의 중간부분 골절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절편 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절편 골절
		4. 다발성 발허리뼈[中足骨] 골절
		5. 치골·좌골·긴뼈의 단일골절
		3. 시크 되크 단뻐기 단필필필   6. 단순 무릎뼈 골절
		) - 0. 전문 구료뼈 글글 7. 노뼈 중간부분 골절(원위부골절은 제외한다)
		8. 자뼈 중간부분 골절(근위부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중인구는 글을(근위구글을는 세되인다)
		10.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1.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2.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13.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250만원	1. 소아의 팔 긴뼈 중간부분 골절
		2. 발목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위팔뼈 골절 윗복사부분 굴곡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관절 탈구
		6. 어깨봉우리ㆍ쇄골 간 관절 탈구

		7. 발목관절 탈구
		'· ᆯᆨᆫᆫᆯ ᆯ ㅜ     8. 2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80만원	1. 위팔뼈 윗복사부분 신전골절
	10022	2. 쇄골 골절
		3. 팔꿉관절 탈구
		4. 어깨뼈 골절
		5. 팔꿉관절 내 위팔뼈 작은머리 골절
		6. 비골(다리) 중간부분 골절
		7.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 늑골 골절
		9.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0. 위턱뼈 골절 또는 아래턱뼈 골절
		11.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40만원	1. 척추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2. 노뼈 골두골 골절
		3. 손목관절 내 월상골 전방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허리뼈 골절
		6. 손목뼈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허리뼈 골절
		9. 발목관절부 염좌
		10. 늑골 골절
		11. 척추체 간 관절부 염좌와 주위 연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손목관절 탈구
		13.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2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
		2. 손허리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손허리뼈 간 관절 탈구
		4. 손목관절부 염좌
		5. 모든 불완전골절[비골(鼻骨)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0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관절 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6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3급	4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급	2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태	
		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비고>

- 1.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질병명 중 개발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 급 높게 보상한다.
- 2.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질병명 중 단순성 선 모양 골절로 뼛조각의 위 치 변화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보상한다.
- 3.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질병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의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 [별표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2호(후유장애 등급별 맹견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액의 한도)

¬	<b>-</b> /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애
1급	8,0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7,200만원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야 하는 사람
3급	6,4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

1		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
		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5,6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
		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4,8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2. 선생계성의 가장 또는 생선가장에 무엇한 상에가 담아 독일이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4,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는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 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3,2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
		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 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		

1	I	
		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의 연속 할에 가진할(版關即, 무더선 뼈가 진신이 어울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
		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 또는 난소를 잃은 사람
8급	2,4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1,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
		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기억 되의 2개 논가역을 옳는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
		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
		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 게 된 사람
		기 된 자듬 8.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2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 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 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 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 13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1,0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 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 9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 3개의 발 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8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 6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이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욱의 말가락을 모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급	50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 4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팔이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가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 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 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비고>

-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배상한다.
-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3."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4."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 가락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5."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6."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발허리발가락관절[中足趾關節] 또는 제1지 관절(엄지발가락은 발가락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7."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했어도 맨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8."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9."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 전자서명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전자서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 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 【용어해설】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 1. (생략)
-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 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보험증권(보험가입증권) 등(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 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거나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 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 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보험증권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명	인수비율

## 단체취급특별약관(I)

####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규약에 따른 단체를 말합니다)를 제외한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 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제1종 단체의 경우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 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 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 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 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100인 이상의 단체

####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 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단체취급(1)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단체취급특별약관(I)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단체취급특별약관(I)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합니다.

####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①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취급특별약관(I)을 따릅니다.

# 단체취급(1) 보험기간설정 추가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취급 특별약관(I)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 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제3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취급 특별약관(1)을 따릅니다.

## 단체취급특별약관(11)

####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규약에 따른 단체를 말합니다)를 제외한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 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제1종 단체의 경우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 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 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 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 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 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100인 이상의 단체

## 제2조(대표계약자)

- ①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다수 계약자 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계약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대표계약자는 개별 계약자를 대리하여 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험증권, 약관,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③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자는 다른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계약자, 개별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 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단체취급(11)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단체취급 특별약관(II)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단체취급 특별약관(II)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취급 특별약관(Ⅱ)을 따릅니다.

# 단체취급(11) 보험기간설정 추가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취급 특별약관(II)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 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제3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취급 특별약관(Ⅱ)을 따릅니다.

## 단체계약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3. 제3종 단체
  -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 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협정 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 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 전 계약과 동일한 보

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 (보험의 목적 교체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②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단체계약)

#### 제1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단체계약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보험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야 합니다.

####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기간설정 추가특별약관(단체계약)

##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 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제3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 ① 이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총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3조(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4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 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상품다수구매자)

## 제1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 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 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보험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야 합니다.

###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1.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상품다수구매자)

##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 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제3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합니다.
-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날짜인식오류 보장제외 추가약관

####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 조건·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 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2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3조

회사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4조

상기 제1조, 제2조,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청구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청구대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 ① 이 특별약관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용어해설】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 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 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 ②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것을 말한다.
  - 1. 생명보험
  - 2. 상해보험
  -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4.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5.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 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용어해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

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예시】

##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 료된 경우에는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제2조(제출서류)

-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 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해당 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6월1일~2019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해당 연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단,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해당 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별약관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단,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 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 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 손해처리 협조 특별약관

- 이 증권상의 배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재보험상에 다른 배상책임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1. 원수보험자는 배상청구가 성립할 수 있는 정황을 인지하는 즉시 재보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 원수보험자는 배상청구와 그러한 배상청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재보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손해사정과 정산에 협조하여야 한다.
  - 3. 어떠한 정산이나 합의도 재보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 손해처리 통제 특별약관

- 이 증권상의 배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재보험상에 다른 배상책임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1. 원수보험자는 배상청구가 성립할 수 있는 정황을 인지하는 즉시 지체없이 재보험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원수보험자는 배상청구와 그러한 배상청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재보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3. 어떠한 정산이나 합의도 재보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 4. 재보험자는 클레임의 처리와 관련하여 모든 협상, 조정, 그리고 합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재보험사를 대신하여 손해사정사나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 제재위반 보장제외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 사이버 보장제외 특별약관

본 계약은 아래의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연관된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인터넷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사용 또는 오용
- 2.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의 전자적 전송
- 3. 컴퓨터 바이러스나 이와 유사한 문제점
- 4. 인터넷 주소의 사용 또는 오용: 웹사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 5. 웹사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게시된 모든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
- 6.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 손실 또는 손상 (지진 화재 홍수 또는 폭풍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상 제외)
- 7. 인터넷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인터넷 주소, 웹사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기능 또는 오작동 (이러한 오작동이 지진, 화재, 홍수 또는 폭풍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는 제외)
- 8. 지적재산권 침해 (상표, 저작권 또는 특허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사이버 사고 보장제외 특별약관

- 1. 이 보험계약(이후 배서 포함)의 다른 반대되는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사이 버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만약 보험회사가 이 보장제외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사이버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 용어정의

- 3. 사이버손해 :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이버 사고에 기인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피보험자에 게 실제로 발생하거나 제기되는 모든 손실, 손상, 배상책임, 신체상해, 보상, 질병, 사망, 의료비, 배상청구, 비용,방어비용, 각종 경비(손해경감 비용, 벌금, 과태료를 포함하나 이 에 국한되지 않습니다.)를 말합니다.
- 4. 사이버사고 : 어떠한 사람 또는 단체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접근, 처리, 사용 및 운영과 관련된 아래의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 4.1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승인되지 않은 또는 악의적인 단일 사건 또는 관련 사건들의 연속이나 협박, 속임수 또는
  - 4.2. 적절한 조치 실패, 오류 또는 탈루, 사고 또는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 또는
  - 4.3. 배임행위, 법률 및 규정 준수 의무 위반, 신탁 의무 위반 또는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
- 5.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및 통신 시스템, 전자기기 및 그와 유사한 모든 시스템과 그와 관련된 배열, 입력, 출력이나 데이터 저장장치, 네트워크 장비 또는 예비 시설을 말합니다.

# 전염병 보장제외 특별약관 (LMA5396)

- 1. 이 보험계약의 다른 반대되는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염병 또는 그 전염병에 대한 우려 및 위협(실제로 발생했거나 그렇게 인식되거나 관계없이)에 기 인하거나, 다른 원인들과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영향을 받거나, 그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거나 제기된 손해, 배상책임, 손상, 보상, 보상, 신체상해, 질병, 사망, 의료비, 방어비용, 비용, 각종 경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이 변경약관에서 손해, 배상책임, 손상, 보상, 보상, 신체상해, 질병, 사망, 의료비, 방어비용, 비용, 각종 경비는 전염병과 관련된 청소, 방역, 제거, 점검 등의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3. 전염병은 아래와 같이 어떤 물질이나 매개체를 통해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전달될 수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 3.1. 물질이나 매개체는 살아있거나 죽은 것으로 보이는 모든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 충 등의 유기체 또는 변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3.2. 전달되는 방법은 직간접적을 불문하고 공기를 통한, 체액으로 인한, 표면, 고체, 액체 또는 가스를 통한 전염을 포함합니다.
  - 3.3. 질병,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상해, 질병, 정신적 고통 또는 손상, 인간의 건강, 복지 또는 재물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위협합니다.

# 전염병 보장제외 특별약관 (LMA5399)

- 1. 이 보험계약의 다른 반대되는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염병 또는 그 전염병에 대한 우려 및 위협(실제로 발생했거나 그렇게 인식되거나 관계없이)에 기 인하거나, 다른 원인들과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영향을 받거나, 그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거나 제기된 손해, 배상책임, 손상, 보상, 보상, 신체상해, 질병, 사망, 의료비, 방어비용, 비용, 각종 경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전염병은 아래와 같이 어떤 물질이나 매개체를 통해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전달될 수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 2.1. 물질이나 매개체는 살아있거나 죽은 것으로 보이는 모든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 충 등의 유기체 또는 변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2.2. 전달되는 방법은 직간접적을 불문하고 공기를 통한, 체액으로 인한, 표면, 고체, 액체 또는 가스를 통한 전염을 포함합니다.
  - 2.3. 질병,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상해, 질병, 정신적 고통 또는 손상, 인간의 건강, 복지 또는 재물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위협합니다.

# 적용환율 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 적용기준)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보험료 : 청약일

2.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3.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 제2조(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제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 납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공동분담금 특별약관

보상한도까지 적용되는 각각의 보험사고에 대해,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추가하여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 중 보험명세서에 기재된 비율만큼의 공동분담금을 부담합니다.

#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보험목적물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 1년 동안의 월평균 보험목적물수의 증감 혹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1년 동안 월평균 보험목적물수의 예상 증가량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 다.

####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 ① 보험료는 보험목적물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납입합니다.
  - 1. 보험계약자는 매월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보험목적물에 관련된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 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를 매월 ( )일까지 회사에 납입합니다.
  - 3.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 후에 보험기간의 마지막 달의 보험목적물수의 증감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③ 보험증권에 최소보험료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기간 동안 산출한 최종 총보험료가 최소보험료에 미달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최종 보험료 정산시 미달되는 차액을 납입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총보험가입금액 적용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칙)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서 회사가 지급할 총 보험금은 이 계약 납입보험료의 ()%를 한도로 합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총보상한도액 적용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칙)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서 회사가 지급할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 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자기부담금 설정에 관한 특별약관

# 제 1 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에서 보험증권 상 기재된 자기부담금 ( 금액 / % ) 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제재 및 엠바고 특별약관

- 이 증권에 기재된 조항과 반대되는 내용일지라도 아래의 조항이 적용된다.
- ① 만일 보험증권의 개시일에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혹은 그 후 어떤 시기에든 적용이 되는 어떠한 법률이나 규제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담보가 엠바고 혹은 제재를 어기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한다면 , 보험자는 어떠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어떠한 배상책임도 없으며 피보험자의 어떠한 방어 혹은 방어비용, 피보험자에 대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유효한 그리고 회수 가능한 클레임의 지급이 엠바고 혹은 제재사항을 어길 경우라도 보험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합법적인 경우라면 보험자는 그러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허가를 획득하는데 모든 합리적인 방안을 취할 것이다.
- ③ 제1항에서 명시된 것처럼 보험기간동안 보험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법이나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모두는 보험증권에 적용되는 법과 규제를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보험자에 의한 해지라면 최소한 30일내 서면으로 통지되야 한다. 피보험자 혹은 보험자에 의해 해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해지보험료를 지급한다. 그러나 해지시점에 발생한 클레임이 수입 혹은 경과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환급보험료에 관해 더 구체적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보험료는 상호 협의를 따른다. 보험자에 의한 해지의 통지는 비록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환급보험료를 지불했더라도 유효하다.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아래의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 【법규1】개인정보 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 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 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불이익의 내용

- ③ 삭제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④ 삭제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삭제
- 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법규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 우편을 받는 방법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민감정보
    -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 국인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 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⑤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 【법규3】민법

##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 1. 8촌 이내의 혈족
- 2. 4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

# 【법규4】보험업감독규정

#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 2 제3항 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제7-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 7.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 【법규5】보험업법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18. (생략)
  -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라. 주권상장법인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 【법규6】보험업법 시행령

####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 ① 법 제2조 제19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지방자치단체
  - 2. 주권상장법인
  - 3.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 4. 제3항 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 ② 법 제2조 제19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 1. 보험회사
  -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지방자치단체
  -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 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11. 삭제
  -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가. 외국 정부
  -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다. 외국 중앙은행
  -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법규7】상법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제735조의3(단체보험)

-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규8】소비자기본법

####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 기를 요청받을 것
  -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 【법규9】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 리하여야 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삭제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 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 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

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 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 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 구를 포함한다.
  -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①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수 있다.
  - ③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

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 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법규10】전자서명법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법규11】동물보호법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 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件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 한 이동장치를 할 것
  -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4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 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 4.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2.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 넷에 게재한 자
  - 3.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한 자
  - 4.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 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 5.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 6.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 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 중한다.

# 【법규12】동물보호법 시행령

# 제6조의2(보험의 종류 등)

-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이하 "맹견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 ② 맹견보험은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보험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단, 맹견의 월령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령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법규1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제12조의5(보험금액)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에는 1인당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 4. 맹견이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사고당 2백만원
-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 6.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 【법규1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8. (생략)
  -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제46조(청약의 철회)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 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 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

- 고, 다음 각 목의 금전·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등
-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 전·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 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 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 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요 민원 / 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

## 1. 공통 및 상해보험

1) 알릴 의무 위반 관련

#### 【사례1】

S씨는 가입전부터 질병이 있었으나 몇 년 동안 보상 청구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권유로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추후 보상시 불이익이 발생됨을 인지하고 불만 제기

⇒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 반드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정확히 알려야만 합니다.

#### 【사례2】

P씨는 대수롭지 않은 치료라는 생각으로 가입 전 병원 진료에 대해 알리지 않고 가입하였다가 추후 보상시 면책 안내되어 불만 제기

⇒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임의 판단으로 누락시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자필서명 미이행 관련

#### 【사례3】

A씨는 지인인 B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가입을 권하였으나 남편 설득이 여의치 않자 A씨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필하여 보험가입하였고 추후 보상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불만 제기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상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보 험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3) 계약유지 관련

## 【사례4】

K씨는 직업이 변경되어 보험사에 통지하였으나 직업의 위험도가 변경되어 현재 계약의 보험료 및 담보가 변경됨을 안내받고 불만 제기

⇒ 표준약관(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근거하여 직업 급수(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지 등 가입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배상

1) 일상(가족, 자녀)생활중 배상책임 관련

#### 【사례5】

피보험자가 차량 뒷자석에서 하차중 차량문을 열고 내리던중 옆차량을 파손한 사고로 약관 제0조'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

⇒ 차량 하차중 개문발차사고는 자동차를 용법에 맞게 사용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 보험 처리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 【사례6】

피보험자(미성년자)가 돌로 차량에 낙서를 하여 차량에 피해를 준 사고

⇒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에 해당하여 보상하지 않으나, 판례에 따라 책임무능력자는 사리분 별이 안되므로 고의로 보기 힘들다 하여 12세 이하까지는 보상을 하고 있음

## 3. 화재

1) 화재보험의 도난담보(명기가재)관련

#### 【사례7】

K씨는 화재 및 도난을 보상받고자 보험가입을 하였으나 추후 귀금속 등 귀중품은 명기가 재로 등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내용을 알고 불만 제기

⇒ 명기가재란 한점당 300만원 이상 고가의 가재로 보험가입시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서 면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화재보험의 화재의 정의 관련

#### [사례8]

사용하는 열풍기(전열기)에 의해 피보험자의 소파 열변형이 발생한 사례로 약관에서 규정하는 화재의 정의에 대한 분쟁(피보험자는 본건 열변형이 화재라고 주장함)

⇒ 약관 해석상 화재는 연소현상이 있어야 하며 열변형은 화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